

「168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"168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외환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

제3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약정기간

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최초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적립방법

- ①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, 1개월 납입한도는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 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,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 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로 썬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 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해지 시 고객이 미화환산 1,000달러 이상 KEB하나은행에서 해외송금하는 경우 가입시점의 우대이율을 제외한 기본금리로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.3%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 - 이 예금의 신규일 이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이 예금의 가입자가 매월 지정한 날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또는 외국인이 자국의 통장 제시 시 연 0.2%
 - 이 예금의 신규일 또는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 등록 시 연 0.1%

<부칙>

본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기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